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

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2016고단63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2인

【검 사】김윤섭(기소), 오상연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우송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(2) 순번 1 내지 17, 19 내지 2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, 판시 제1, 2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(2) 순번 18, 22 내지 28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